

10여년간 북한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국제법 위반
의견 공개에 즈음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 즉각 석방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361
----------	------

발의연월일 : 2025. 3. 26.

발 의 자 : 김기현 · 유상범 · 박덕흠
유용원 · 최보운 · 김기웅
박충권 · 고동진 · 구자근
이철규 · 김정재 · 박성민
조정훈 · 이달희 · 이종배
정동만 · 최은석 · 김승수
임이자 · 송언석 · 김 건
의원(2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1조제2항,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흥정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난 70년간 역대 정부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불과 지난 10여년 사이에 중국의 탈북민을 돕고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캐나다 교포 선교사는 모두 석방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의 뼈아픈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이 작년 11월 12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 59/2024호 (opinion no. 59/2024)를 채택하고, 이를 올 3월 13일 공개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WGAD는 유엔 공식문서로 공표된 17쪽 분량의 의견문(A/HR C/WGAD/2024/59)에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구금은 영장 제시 없는 체포와 판사대면권 위반, 연락차단상태 구금(incommunicado detention) 등으로 합법적 근거를 원용할 수 없고(자의적 구금 유형 I 해당),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의 행사로 인한 것이며(자의적 구금 유형 II 해당), 변호인 조력권 위반,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사법부 독립과 상소권 부재, 영사 조력권 위반 등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었으며(자의적 구금 유형 IV 해당), 종교인, 남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에 위배되는 차별을 구성하여(자의적 구금 유형 V 해당)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및 자유권규약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WGAD는 또한 최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억류 사건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일 경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전에도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 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 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고,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과독 광부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WGAD 의견 공개 이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WGAD 의견을 환영하고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2023년 12월 19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78/218호 및 2024년 12월 17일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 79/181호에서 북한에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3일 미얀마 인권 결의 37/32호, 동년 9월 27일 미얀마 인권 결의 39/2호, 2019년 3월 22일 미얀마 인권 결의 40/29호에서 거명된 구금된 로이터 소속 와 론 기자와 초 소에우 기자가 2019년 5월 7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된 것에 주목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WGAD 의견 59/2024호 공개를 계기로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헌법상 우리 국민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WGAD가 북한에 10여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그 밖에 WGAD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하고,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

WGAD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륙별로 임명한 인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으로 전세계에서 접수되는 자의적 구금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과 해당국 정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해당되는 개별 사건에 대한 WGAD의 ‘의견(opinion)’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처럼 유엔 공식문서로 공표되며,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인용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권위가 높음.

WGAD는 작년 11월 12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 59/2024호(opinion no. 59/2024)를 채택하고, 이를 올 3월 13일 공개하였음.

앞서 WGAD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 씨와 두 딸, 1969년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 씨, 탈북 후 중국에서 보위원에게 잡혀 온 국군포로 최상수 씨와 그 아들 최성일 씨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판단을 내린 바 있고, 1970년대 유럽에서 납북된 파독 광부 강중석 씨와 수도여고 고상문 씨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WGAD 의견 59/2024호 공개를 계기로 이번 WGAD 의견 채택을 환영하고, 북한이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그 밖에 WGAD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는 판단을 내린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즉각 송환하고,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석방될 때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를 거명하여 석방을 촉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모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과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위하여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